

「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」 신규조문대비표 (2023.10.16)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제3조(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)	<p>⑥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 를 받은 날부터 <u>2개월</u>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려야 한다. 다만, 저축자가 사망, 해외장 기출장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⑥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려야 한다. 다만, 저축자가 사망, 해외장 기출장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⑤항에 따른 기간으로 조정</p>
제17조(관할법원)	<p>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 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 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</p>	<p>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 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 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 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</p>	<p>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따른 조항 변경</p>

		<p>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
-부칙-	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자구 수정